

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[] 고용
[]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			
신고인 (감정평가법인등)	[] 감정평가사사무소 []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[] 감정평가법인					
	대표자 성명	등록번호 또는 인가번호				
	사무소명 또는 법인 명칭	전화번호				
	소재지					
고용인 인적사항	구분	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주소 및 전화번호	자격번호 (감정평가사 인 경우)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유의사항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신고 처리
신고인		한국감정평가사협회		처리기관: 국토교통부(부동산평가과)		